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변경·해제,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단위는 시·군·구를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함. 정의로운전환특구 신청 시에는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예상) 여부,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발생(예상) 여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정 필요성 여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요건별 판단지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시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를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음.

정의로운전환특구 대상 지원내용은 [별표 2]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공동 고시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단위)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정의로운전환특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를 단위 지역으로 한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산업구조·특성에 따른 경제권역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신청 절차)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를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관할 시·군·구를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 신청 요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자체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
2. 제5조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방법론 등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센터에게 제5조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근로자, 사업주,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환 대상 산업·시설·기업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전환 대상 기업 및 협력업체·하청기업 등 연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3.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협의를 거친 경우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의 협의를 거친 경우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 등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3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경과 및 그 결과의 자체 계획 반영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충족 여부의 판단은 시·도지사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국가 법령, 계획, 정책 또는 정부의 결정 등에 따라 산업·시설·공정

등의 전환이 예정되거나 확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전환이 지역의 산업·고용 구조 및 지역경제 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3.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탄소중립 정책에 기인한 구조적 전환인지 여부

③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전환 대상 산업·시설·기업과 관련된 직접 고용 규모

2. 협력업체·하청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간접 고용 영향

3. 전환 정책으로 인한 고용감소 등 충격 발생 가능성

4. 그 밖에 고용환경 변화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49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량 감소, 가동률 저하 또는 매출 감소 가능성

2. 그 밖에 지역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전환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정기준의 적용원칙 및 세부기준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정기간 연장) ① 시·도지사는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특구의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역의 산업·고용·경제 여건 현황 및 지정(혹은 이전 연장) 시점 대비 변화 정도
2.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의 추진 실적 및 효과
3. 영 제49조제8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효과
4. 지정기간 연장 이후의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 이후의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의 산업·고용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정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책)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지원대책의 범위는 [별표2]와 같이 구성하며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마련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한 지원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
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한다.

1. 정의로운전환 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 영 제5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에 두는 지원센터
2. 정의로운전환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 영 제53조제3항
에 따라 정의로운전환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설립하는 지원센터

② 중앙센터는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 신청 단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5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안내
2. 산업·고용 전환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 수집·분석 및 제공
3.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 계획의 수립 지원

③ 지역센터는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이후의 지원에 관하여 관할 특구
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2. 관할 지역 기업·소상공인의 사업전환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3. 고용유지·직무전환·생활안정에 관한 지원과 관련 사업과의 연계
4.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발굴·기획 및 시행
5. 근로자, 사업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의
운영

6. 제6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지원

④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중앙센터는 지역센터에 대하여 기술지원·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는 법 제53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53조 제4항 각 호의 범위에서 수행한다.

제9조(지정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특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중앙센터는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전에 정의로운전환특구 지정 이후의 지원 실적과 효과를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세부 지정기준 (제5조제2항~제5항 관련)

1. 기준 적용원칙

- 가. 정의로운 전환특별지구의 세부 지정기준은 고시 제5조제2항에 따른 필수요건과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선택요건으로 구분하며, 신청서 검토와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나. 판단지표는 국가통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료, 전환 대상 기업·시설의 공식자료, 산업별 협·단체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우선한다.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산정방법과 가정을 명시한 합리적인 추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다. 지정기준별로 규정된 판단지표는 전환의 유형, 산업·시설·공정·제품 및 공급망의 특성, 지역의 산업·고용구조와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나타내는 복수의 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 최신성 및 해당 전환에 대한 설명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표를 선택한다.
- 라. 판단지표는 최초 전환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정된 변화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다만, 전환의 성격과 공식적인 전환일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산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마. 판단지표의 산출식에서 사용하는 기준시점 기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T_0 : 전환에 따른 변화분을 산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시점으로, 전환 발생 직전* 연도로 한다.
* 연도 단위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 영향이 반영되기 전인 전환 발생 직전 연도로 설정
 - 2) T_1 : 전환에 따른 변화분 산정을 위한 비교시점으로, 최초 전환 발생 이후 5년 이내가 되는 연도로 한다.
 - 3) $T_0 \sim T_1$ 은 T_0 부터 T_1 까지의 기간 중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의 합계를 말한다.
 - 4) 기준시점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준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의 가용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활용한 자료의 기준연도, 출처 및 대체 적용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지정기준

가. 필수요건(제5조제2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지표	판단 기준
1. 국가 법령, 계획, 정책 또는 정부의 결정 등에 따라 산업·시설·공정 등의 전환이 예정되거나 확정되었는지 여부	▲ 정부·자치단체의 전환계획 결정문·의결서 ▲ 전환 인허가 처분서 ▲ 전환 관련 예산 및 투자계획 등의 유무
2. 해당 전환이 지역의 산업·고용 구조 및 지역경제 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 전환 산업(기업)의 종사자 수, 공급망 규모, 지방세수 비중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기업)인지 여부 ▲ {신청지역 전환 대상 부문 고용·설비·생산 비중(T_0)} ÷ {전국의 전환 대상 부문 고용·설비·생산 비중(T_0)}
	▲ 지역 주력산업의 경기실사지수(BSI) ▲ 생산·판매여건 변화 ▲ 고용규모 증감 ▲ 체불임금액 현황 ▲ 지역 주요 선도기업의 재무현황 ▲ 산업생산지수(IIP) 등
	▲ 그 밖에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 주요 기업의 휴·폐업 및 이전·축소 결정 등 지역 경제 전반의 급격한 침체 우려
3. 단순한 경기변동이 아닌 탄소중립 정책에 기인한 구조적 전환인지 여부	▲ 대내외 경기변동, 원가상승, 수급·통상여건 변화 등이 아닌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구조적 전환인지 여부

나. 선택요건(제5조제3항~제5항):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것

선택요건	판단 지표	판단 기준
1.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전환 대상 산업·시설·기업과 관련된 직접 고용 규모	▲ 직접고용 영향 인원($T_0 \sim T_1$) ▲ {전환 후 (예상) 고용인원(T_1) - 기준 고용인원(T_0)} ÷ 기준 고용인원(T_0) × 100
	협력업체·하청기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간접 고용 영향	▲ 거래·계약관계가 확인되는 협력·하청·도급·용역업체 영향 인원($T_0 \sim T_1$) ▲ 전환 영향 (예상) 간접고용 인원($T_0 \sim T_1$) ÷ 전환 관련 간접 고용인원(T_0) × 100
	전환 정책으로 인한 고용감소 등 충격 발생 가능성	▲ 재교육·전직 필요 (예상)인원($T_0 \sim T_1$) ÷ 전환 영향 (예상)인원($T_0 \sim T_1$) × 100 ▲ T_0 시점 대비 T_1 시점의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근무지역 비교

선택요건	판단 지표	판단 기준
2. 해당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지 여부	생산량 감소, 가동률 저하 또는 매출 감소 가능성	$\Delta \{ \text{생산량(액)}(T_0) - \text{생산량(액)}(T_1) \} \div \text{생산량(액)}(T_0) \times 100$ $\Delta \text{가동률}(T_1) - \text{가동률}(T_0)$ $\Delta \{ \text{매출액}(T_0) - \text{매출액}(T_1) \} \div \text{매출액}(T_0) \times 100$ $\Delta \text{영업이익률}(T_1) - \text{영업이익률}(T_0)$
	그 밖에 지역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Delta \{ \text{전환관련비용}(T_1) - \text{전환관련비용}(T_0) \} \div \text{전환관련비용}(T_0) \times 100$ $\Delta \text{직접영향 기업 수}(T_0 \sim T_1) \div$ $\text{신청지역 전체 사업체 수}(T_0) \times 100$ $\Delta \text{사업축소 (예상) 기업 수}(T_0 \sim T_1) \div \text{직접영향 기업 수} \times 100$
		Δ 그 밖에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여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 여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전환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Δ 관련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 지정서, 법정계획, 정부 결정 및 공식자료
	그 밖에 위원회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 3개년 인구증감률: $[\{ \text{인구}(T_0) \div \text{인구}(T_0-3) \} - 1] \times 100$ Δ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T_0) $\div$ 전체 인구(T_0) $\times 100$ 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비중, 가용재원 등 지방재정지표 Δ 타 지역의 산업 및 기업으로의 거리·이동시간 등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표 2]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원대책(제7조제1항 관련)

1.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 고용유지 지원
-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

2. 탄소중립 전환

- 기업의 사업전환 유도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지원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촉진
- 탄소중립 전환 기업 대상 금융 지원
- 탄소중립 설비 지원

3. 기업 경영안정

- 경영난을 겪는 정의로운전환특구 내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4. 지역산업 전환 촉진

-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지방투자 촉진
-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지역내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지원